

##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

제정	1981.	8. 4	조례 제 18호
개정	1982.	8. 4	조례 제 175호
	1985.	6. 19	조례 제 331호
	1987.	4. 15	조례 제 424호
	1988.	5. 3	조례 제 469호
	1998.	9. 23	조례 제1088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7.	3. 28	조례 제1510호
일부개정	2015.	7. 31	조례 제2090호
일부개정	2017.	6. 20	조례 제225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회계법」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3. 28, 2017. 6. 20>

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98. 9. 23, 2015. 7. 31>

1. 징수관, 재무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부채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
2.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재정보증)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 <개정 98. 9. 23>

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. <개정 98. 9. 23>

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.

제4조(재정보증한도액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3. 28, 2015. 7. 31>

제5조(회계관계공무원 겸직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 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,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98. 9. 23>

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「지방회계법」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98. 9. 23, 2007. 3. 28, 2017. 6. 20>

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98. 9. 23>

제8조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, 피보증인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98. 9. 23>

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. <개정 98. 9. 23>

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대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.

부칙 <1982. 8. 4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

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.

② 이 규정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규정 시행일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.

부칙 <1985. 6. 1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7. 4. 1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8. 5. 3>

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9. 23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7. 3. 28 조례 제151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칙 <2015. 7. 31 조례 제209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6. 20 조례 제225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